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해외여행비 할인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

-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손해보험회사가 해외여행 중 휴대폰 도난으로 신고돼 보험금을 지급한 15,531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폰손해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대거 적발함.
 - 조사결과, 출입국 사실이 없는 57명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여권가 도난사고 확인서 등을 위조·변조하는 수법으로 실제 발행하지 않은 휴대폰 손해보험금을 청구해 약 1.7억원(159건)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.
 - 이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휴대폰 도난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보험금 청구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난사고확인서 등의 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임.
-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험계약자는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장계좌와 현금카드만 건네주면 해외여행 경비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여행사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없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.
 - 실제로 여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07년 5~12월까지 해외여행경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57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이들 명의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, 해외여행 중 ‘날치기’ 등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함.
-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출입국 기록 확인을 강화하고 휴대폰 도난이 빈발하는 해외여행국가에서 발생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함.
 - 또한,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임.

(‘해외여행경비 할인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에 주의’,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, 12/24)